

자율성 강화·행정간소화 '진일보'

불교관계법 국회상정 내용과 의미

지난 11일 정각회가 의원발의한 불교관계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불교의 자율성 강화이다. 그동안 전통사찰주지가 취임후 15일 이내에 문체부장관에 신고해야했던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제4조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해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도록 했다. 또한 전통사찰 경내지보존구역은 신설(전사법 제2조 제6호)에 경내지 규정만 있고 보존규정이 없어 행정관청, 공인관리소와 빛어온 마찰을 해소토록했다. 이 조항신설로 사찰주변에서의 영입행위금지 및 불교목적외의 건물을 합부로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찰보호기능을 강화했다.

전통사찰 소속종단을 관리주체로 규정했다는 것도 주목된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할 때 문체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했던 제9조 경내지 보호조항에 문체부장관이 소속대법원의 대표자와 협의토록 해 종단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여기에 전통사찰토지가 공원에 편입된 경우 공익사업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하도록 했다. 대부분 전통사찰주변은 공원으로 개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내지가 공원구역에 편입되면서 받게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제33조제2항)에는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의 이용료를 공원사업 기여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행정의 간소화다. 전통사찰이 신

선해 건축법에 따른 신고부하를 받지 않도록 한다.

셋째는 사찰명의 농지 취득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이번엔 발의된 개정법안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무소유와 선농일치를 표방하는 불교계는 개인명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지법개정안은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이 원형복원 및 이의 보존 관리, 불교

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예외조항(농지법 제6조2항)에 따라 전통사찰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농지법으로인한 불교계의 피해는 대단하다. 조계종 기획실의 조사에 따르면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전통사찰 농지 203,412평방미터가 수용되었으나 사찰이 농지소유를 할수없이 토지유실을 지켜보기만 하고있는 실정이다. 사찰보존과 유지에도 어려움이 마한가지다. 지난해 남

건축법 상관없이 전통사찰건조물 신·증축 가능 사찰명의 농지취득 허용... 경내지 보호 제도화

증축할 경우 전사법과 건축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허가상 불의가 많았다. 특히 전통사찰은 건축법적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5년 건축법개정과 함께 건축법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최근에 이루어진 전통사찰내의 불사는 대부분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6조 허가사항에서 전통사찰 건조물은 문체부장관이 건축법 소관 관청과 협의, 허가하도록 규정해 건축법적용없이 신 증축이 가능토록했다. 이는 특별법인 전사법이 건축법에 우

우의 수행을 위해 경내지에 인접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하는것(농지법 제6조 제2항제9호아목)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특히 농지법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헌법 제11조2항)을 규정하고있어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그러나 농지취득제한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성이 보장되거나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농

원 실상사의 경우 사찰진입로 확장 및 주차시설등 도량정비를 위해 사찰인근 농지를 매입하려했으나 사찰명으로 농지매입이 어려워 불사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불교계는 이번 불교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농지법개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있다.

이준엽 기자



팔만대장경 판각 재연

지난 7일 해인사 구광루에서 열린 팔만대장경 세계유산재현사업 '팔만대장경 판각 및 인경(인쇄) 재연행사'에서 스님과 외국인 등 일반인들이 직접 판각에 참여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이 파헤쳐 눈길을 끌었다. 오교수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불자의 운동' 주제발표에서 불교계는 국립공원내에서 4.93%나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30여년간 국립공원 보존노력을 소홀히 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사찰수입과 이익사업에만 민감하게 행동해 왔을 뿐 국립공원에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호씨(대한불교청원회 정책국장) 역시 사찰환경운동이 피해 발생에 따라 수세적·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행태를 꼬집었다. '사찰환경운동과 지역운동' 주제발표에서 김씨는 사찰의 지도자와 신도조직이 불교다운 환경운동을 몸소 구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을 보존하고자 노력할 때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지역적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우 기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찰의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불교의 환경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지난 13~14일 해인사에서 개최됐다.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지정 1주

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불교의 환경운동과 사찰환경보존'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이번 '불교지도자 환경워크숍'에서는 불교환경운동 방향, 사찰환경 및 국립공원 보존 등에 대한 실태와 대응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불교 환경운동과 사찰보존' 워크숍 지상중계

첫날 기초발제에 나선 3명의 발제자는 사찰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정 교수(동국대 철학과)는 '불교의 생명사상

을 진정시키는 자기정화만이 자연의 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경교수(동국대 조경학)는 '사찰환경보존의 문화적 의의'에서 사찰환경이란 사

"사찰·신도·주민 공조 환경운동 펼쳐"

현대인 탐욕버리도록 중도·무아사상 자각시켜야

과 환경운동'에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과학이 불교의 중도·연기·무아·자비사상을 과감하게 도입수용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의 환경위기가 인간생존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 김교수는 자연에 대한 보호와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탐욕에 의한 과소비 문화에 물든 현대인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자각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불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을 통해서 인간자신의 탐

욕을 진정시키는 자기정화만이 자연의 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경교수(동국대 조경학)는 '사찰환경보존의 문화적 의의'에서 사찰환경이란 사

찰의 다각적인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종단과 사찰이 적극적으로 사찰환경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종단과 사찰의 사찰환경보존 대책으로 △생태회귀프로그램으로서의 불교적 환경윤리 정착 △사찰환경진정립과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침서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류창희씨(자연생태연구소장)는 '국립공원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불교의 대응 방안'에서 사찰 주변을 비롯한 국립공원 자연지역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慶 정규대학 中央僧伽大學校 '97學年度 新(編)入生 募集 祝 개편인가

본교는 '79년 2월에 개교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한 종단에서 운영하는 「승려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개교 이래 6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91년 3월 각종학사로 4년제 대학학력을 인정받았고, '96년 12월 11일 안양교정에서 정규대학으로 개편인가 받아 이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서, 제반정비와 학풍을 고양하고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정립을 위한 김포교정 신축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승가교육의 중심도량(道場)」이 될 것입니다.

모집요강 및 정원

불교학과 (주간)	60명
사회복지학과 (주간)	60명
계	120명

※ 제2지방을 할 수 있음.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지원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조계종단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만으로 우선 선발함.
※ 스님들이 강원대학중 「수능시험」준비를 하며 「경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들에게 전통승가교육 바탕위에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강원대교과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 타종단 승려도 종단 추천으로 응시, 정원의 5%내외로 입학 할 수 있음.

고교내신성적

40%	40%	20%	100%
400점	400점	200점	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 전형방법: 하기 전형방법으로 입학정원 60% 범위 내외로 선발 함.
- 장 소: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96. 12. 16. (월) ~ '97. 1. 17. (금) 10:00~17:00 (단, 토요일 제외)
- 접수기간: '97. 1. 13. (월) ~ '97. 1. 17. (금) 10:00~17:00
※ 전화로 우편 교부신청하거나 접수기간내 우송접수 가능함.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내신성적표(입학원서 중장 기록 난)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입학원서 뒷면 기록 난)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원본 및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원본은 대조 확인후 반환)
2)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석차 영명부 사본 1부 (이상은 출신고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함)
4) 승려 증명서 1부 (총무원 발급)
5) 최종 수계증 사본 1부
6) 특별전형 지원자: 강원 대교과 (4년)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건강 진단서 1부 (대학 입시 또는 입사용 - 보건소 등 발급)
8)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은사, 사숙·형 등)
9) 호적 등본 1부
10) 주민등록 초본 1부
11) 갈라사신(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 3x 4Cm) 4매 (원서부착 3매의 별도)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3,000원
2) 전형료: 55,000원
- 전형일정 ※예비소집시 원서교부증과 승려증 필참
• 예비소집(특별·일반전형) - '97. 1. 21.(화) 09:00~09:40(음 12월13일)
• 불교교리 및 상식고사(일반전형) - '97. 1. 21.(화) 10:00~11:10

본교 특징 및 입학생·졸업생 특전

- '96년 12월 11일 정규대학으로 개편인가 되었으며, '97학년도 2.3학년 편입생은 이례시절중 5·6·8명의 학사학위 등 정규대학 혜택의 기회를 받는다.
 - 1. 본교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승려 기본교육기관」이므로, 본교 졸업자는 비구 및 비구니계와 별개 5급(경)을 필수 받는다.
 - 2. 본교는 종단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므로 일반대학 반액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 3.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공과목만 개설 운영하는 경영학원이나 교단적인 대학이 아니며, 승려로서 기본적으로 수학해야 할 교과목을 빠짐없이 개설, 수학과 수업을 겸비하는 「종단인재양성도량(道場)」이다.
 - 4. 불교학과는 「불교·선·인도철학」의 중요과목을 체계적으로 개설, 불교학 관련 전반에 대한 이해로 수행과 연구기반을 넓게하고, 사회복지학과는 「수행교육과정(불교, 승려기본 학습과목)을 배우며 사회복지학과목을 고루 수학,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구현하는 사회복지자가 되도록 한다.
 - 5. '97년입생은 본교 졸업시 「문학사」, 학위를 받게된다.
 - 6.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은 보건복지부의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사회복지사업이 용이하다. ('97년입생은 2급 취득)
 - 7. 3~4학년중에 본교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1년간 수학하면, 보건 복지부의 「보육 교사 2급」 자격을 취득, 어린이 집 개인 용이함.
 - 8. 병역 연기혜택, 군복사 및 각종 학사학위 지원가능, 대학 예비군 부대편성(연역 5년차 이하 년종 1일)의 기본교육단 부여, 5년차 이상 교육면제 ('97년입생은 대학원 진학자 군복사지원 가능)
 - 9. 비구·비구니 수행관(기숙사)이 무료로 운영되며, 학인 편의를 위한 대학버스 운행.
- ### 2·3학년 편입생 모집요강
- 1) 모집내용: 제2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00명
제3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 0명
 - 2) 지원자격
제2학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2년('97.3) 이상 승려로서 대학 1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전문화 졸업자, 방송대·산업대(개방형) 1학년 이상 수료자) 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 가능
제3학년(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97.3. 조계종의 승남 3년 이상 승려
 - 3) 전형방법과 일정은 신입학 요강과 대동 소이함.
※ 지원 희망자는 본교 교학처에 문의 바람.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02)925-5307 ~ 9, 926-1377, FAX(02)928-4302